

연결(모·자)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연결법인 기본사항

① 법 인 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표자 성명		④ 연 결 사 업 연 도	. . . ~ . . .
⑤ 전 화 번 호		⑥ 전 자 우 편 주 소	
⑦ 소 재 지			
⑧ 업 태		⑨ 종 목	
⑩ 주 업 종 코 드			
⑪ 모 법 인 명		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	
⑬ 법 인 구 분	1. 내국, 2.외투(비율 %)	⑭ 조 정 구 분	1. 외 부, 2. 자 기
⑮ 외부감사대상여부		1. 여, 2. 부	
⑯ 법 인 종 류 별	구 분	영리법인	비영리법인
		상장법인	코스닥상장법인
		기타법인	
	중소기업	11	21
	중견기업	71	72
	상호출자제한기업	81	82
	그외 기업	91	92
		93	94
⑰ 신 고 구 분	1. 정기신고, 2. 수정신고(가. 서면분석, 나. 기타), 3. 기한후 신고, 4. 경정청구		
⑱ 주식변동	1. 여, 2. 부	⑲ 감가상각방법(내용연수)신고서 제출	1. 여, 2. 부
⑳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	1. 여, 2. 부	㉑ 장부전산화	1. 여, 2. 부
㉒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	1. 여, 2. 부	㉓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도입	1. 여, 2. 부
㉔ 사업연도의제	1. 여, 2. 부	㉕ 결산확정일	. . .
㉖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		㉗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	
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	1. 여, 2. 부		

2.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

구	분	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	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	계
연결전	㉙ 수입금액	()			
	㉚ 결산서상 당기순손익				
	㉛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				
연결후	㉜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)				
	㉝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	
	㉞ 과세표준 개별귀속액				
	㉟ 연결법인의 산출세액				
	㊱ 총부담세액				
	㊲ 기납부세액				
	㊳ 차감납부할세액				
㊴ 조 정 반 번 호		㊵ 조 정 성 명			
㊶ 조정자관리번호		자	사 업 자 등 록 번 호		

신고인은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7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붙임 서류	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수수료 없음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작성 방법

1. ① 법인명란, ② 사업자등록번호란, ③ 대표자성명란, ⑤ 전화번호란,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④ 연결사업연도란: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3. ⑧ 업태란, ⑨ 종목란, ⑩ 주업종코드란: 주된 업태·종목·주업종코드[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(별지 제17호서식)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·종목을 말합니다]를 적습니다.
4. ⑪ 모법인명,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: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5. ⑬ 법인구분란, ⑭ 조정구분란, ⑮ 외부감사대상여부란, ⑰ 신고구분란, ⑱ 주식변동란, ⑲ 감가상각방법(내용연수)신고서제출란, ⑳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, ㉑ 장부전산화란, ㉒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, ㉓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도입란, ㉔ 사업연도의제란: 각각 해당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6. ⑯ 법인종류별란: '중소기업'과 '중견기업'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연결집단용)(별지 제76호의18서식)상 적합 기업, '상호출자제한기업'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 - "중소기업"은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"○"표시를 해야 합니다.
 -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 - 국세청의 「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·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7. ㉕ 수입금액란: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(별지 제17호서식)의 ㉕ 합계란 중 ④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8. ㉖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: 표준손익계산서[별지 제3호의3서식(1), (2)]의 (법인세 차감 후)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. 다만,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, 당기순손실은 "△" 등 음(-)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.
9. ㉗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: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23서식)의 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0. ㉘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: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23서식)의 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1. ㉙ 연결소득개별귀속액: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23서식)의 ㉙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2. ㉚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: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23서식)의 ㉚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㉛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3. ㉜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: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23서식)의 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㉝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4. ㉞ 총부담세액란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23서식)의 ㉞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㉟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,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㉞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5. ㊲ 기납부세액란: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23서식)의 ㊲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㊳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6. ㊴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㉞ 총부담세액에서 ㊲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17. ㊵ 조정반번호란: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.
18. ㊶ 조정자관리번호란, ㊷ 조정자란: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.
19. ㊸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: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(변경신청)서(별지 제64호의5서식)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(단위: 원,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).
20. ㊹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: 과세표준계산방법이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(원화 재무제표 기준)일 경우 "1"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(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)일 경우 "2"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(자산,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)일 경우 "3"을 적습니다.
21. ■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